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사 보고서

2025. 8.  
정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4. 권성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11. 29.)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2.)

상정

-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3.)

상정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상정

○ 제42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2차 전체회의(2025. 7. 3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권성동의원)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 **9. 부대의견**

가. 한국산업은행은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자체없이 그 목적 및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 및 운영시 핵심광물 공급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

게 지원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